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
----------	-----

제출일자 : 2008.6.12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2008년 7월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건강보험료와 통합되어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명 명칭 변경
-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 다. 지원대상 및 시기(안 제3조, 제4조)
- 라. 지원대상자 선정, 조사 실시(안 제5조, 제6조)
- 마. 보험료 지급 및 대상자 관리 등(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노인복지법」 제4조
- 나. 예 산 : 비용소요 추계서 참조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08. 5. 20 ~ 6. 8(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 노인계층”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 1만원 미만 보험료 납부자로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노인부부 또는 노인단독으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하구 지역 가입자에 한한다.

제4조(지원시기) 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 공단은 제3조의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

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급여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급여 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급여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급여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지정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용소요 추계서

□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 10,000원 미만 납부자 현황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		보험료 10,000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수(명)
	인구수(명)	증가율(%)	
2008년	31,427	-	310
2009년	33,962	1.0806	335
2010년	36,950	1.0879	362
2011년	39,491	1.0687	384

- ▷ 노령연금 지원대상자 제외한 숫자임(조례 제3조 참조)
- ▷ 보험료 10,000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수는 인구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아래와 같은 대상자 감소 요인을 감안하여 추계한 숫자임
 - 2008. 7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기존 70세이상 ⇒ 65세이상)
 - 2008. 7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 보험료의 4.05% 상당의 금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같이 부과되므로 총 보험료 인상

□ 연도별 소요재원 추계

(단위: 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월간(원)	1,616	1,746	1,887	2,001
연간(원)	19,392	20,952	22,644	24,012

※ 2008년도 상반기(6개월)분은 기존 예산편성되어 있으며 하반기(6개월)분은 추경예산 편성하여 지급코자 함.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